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9. 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1. 5. 6

다. 상정일자 :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1년 5월 23일)
상정, 심사, 보류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11년 9월 1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 영 복 기획예산과장

가. 제안이유

동 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욕구충족과 행정수요반영을 위한 지방자치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1)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안 제2조에서 "주민"이라함은 1.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안 제3조에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

(4)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규정

(5) 안 제7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그리고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6) 안 제10조제1항과제2항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 참여예산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1.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단,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동별 2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제5항과

제6항에서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예산부서의 장이 간사를 하도록 규정

(7)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안 제12조에서 운영원칙, 안 제13조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

(8) 안 제14조에서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안 제17조에서 5개항의 해촉 사유를 명시

(9) 안 제19조에서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10) 안 제20조에서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회의비용, 참석수당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명금길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2005. 8. 4 법률 제7663호)로「지방재정법」및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규정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가 (2011. 3. 8)재개정됨으로서 행정안전부 3개의 표준안 중 제2안을 기

본으로 하되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여론의 일부를 수렴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에서 공무원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하여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전국 1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올바르게 조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참여할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이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첫째 위촉위원의 구성을 보다 폭넓은 분야로 다양하게 확대하고, 둘째 위촉할 위원들을 심사할 심사위원의 구성 과 자격, 심사기준 과 방법 등 세부적인 심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셋째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고취 및 예산편성 능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확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행규칙의 제정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1. 9. 1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의 주민참여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시간의 단축과 지역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30명"을 "20명"으로 함.(안 제10조제2항)

나. 안 제21조제3항을 삭제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한다.

안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⑥ (생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원안과 같음) ② ---------- ----20명---------- ③~⑥ (원안과 같음)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② (원안과 같음) 〈삭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1-33

제출년월일 : 2011.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사유

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안 제5조)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고(안 제6조)

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라.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운영원칙 명시(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3. 제정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1. 3. 31 ~ 4. 20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5. 3)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그리고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구 본청의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2명 이하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각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활동범위,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간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